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에 대한 연구

이상림*

〈 초 록 〉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목포대학교는 사학연금공단과의 학술연구 협약기관임)

제1장 서론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금재정의 고갈을 우려하여 연금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급부체계에 변화를 주어 부담은 상향 조정하고 급부는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즉, 사학연금 가입자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의 개정을 통해서, 첫째,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공백기의 발생과, 둘째,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결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퇴직 후 약 5년에 걸쳐 소득공백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지급률이 연 1.9%에서 단계적으로 낮아져 1.7%가 되도록 개정되어 소득대체율이 종전 대비 88.7%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 28만 3천명¹에 이르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악화된 미래의 연금소득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공하는 것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게 요청된다. 하지만 개정된 사학연금법으로 인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이 악화될 사학연금 가입자가 이를 개선하고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사학연금공단에 법적으로 허용된 업무의 내용도 매우 한정된 상황이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을 미래의 소득흐름으로 전환하여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퇴직 시점에서 형성된 자산이나,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수당을 활용하여 퇴직 후 소득공백기 및 연금수급기 동안 소득의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급연령 이후 발생하는 연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퇴직 후 생활에 보다 적합한

1. 2015년말 재직자를 기준으로 한 가입자 수이다.

소득흐름으로 설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

한편 사학연금공단이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안정적인 퇴직 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접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²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학연금공단이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의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의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학연금공단이 2011년 수립한 ‘사학연금 신 중장기종합발전계획(TOP*2021)’에서는 국내 연금 및 공제회의 사업영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애를 통해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가운데 신규사업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선 2015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후 사학연금 가입자 및 사학연금공단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첫째, 사학연금 가입자가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사학연금공단이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설립)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관장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2장 사학연금법의 개정과 경제적 안정

1. 사학연금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부담률의 조정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의 부담률을 기존 7.0%에서 2016년 8.0%로 인상한 후 2020년까지 매년 0.2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9.0%가 되도록 개정하였다. 가입자의 부담률 인상으로 사학연금의 재정수지의 개선, 기금고갈시점의 연장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부칙(2015.12.15) 제10조).

나.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

사학연금제도에서의 지급률을 기존의 연 1.9% 가산 방식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35년부터 연1.7%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³ 이와 같은 개정으로 사학연금제도가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원칙에 보다 충실해지도록 하는 한편, 사학연금의 수급부담 구조를 개선하여 연금제정의 안정화도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부칙(2015.12.15.) 제9조 제1항).

〈표 1〉 2015년 개정 지급률

적용기간	지급률 인하 크기	비 고
2016년 ~ 2019년	매년 0.022%	2016년 1.878% 적용
2020년 ~ 2024년	매년 0.010%	2020년 1.79% 적용
2025년 ~ 2034년	매년 0.004%	2035년부터 1.7% 적용

3. 그러나 개정된 사학연금제도에서는 재직기간 33년을 36년으로 연장하는 등 실제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지급률 인하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다. 연금지급개시 연령 상향

2015년 개정 이전에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65세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에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되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도록 하였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부칙(2015.12.15.) 제7조).

〈표 2〉 2015년 개정 연금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2016년 ~ 2021년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6년	2027년 ~ 2029년	2030년 ~ 2032년	2033년~
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조정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기존의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에서 1.6배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연금수급자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5조 제2항).

마. 연금액의 한시적 동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해오던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학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것으로, 장기의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기존 연금수급자도 고통을 분담하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부칙(2015.12.15.) 제5조).

바. 소득재분배 성격 반영

사학연금제도에는 없던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하여 연금지급률 중 1% 초과 부분인 0.878 ~

4. 1996년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7%는 민간의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유지하고, 1%에 대해서는 본인 소득과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평균소득을 각각 50%씩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도록 개정하였다.⁵ 이는 국민연금과의 구조적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학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부칙(2015.12.15.) 제9조 제2항).

사. 연금수급 재직기간 조정

그동안 20년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연금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정 시행일 당시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⁶ 이러한 개정은 사학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단기 재직자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한 연금수급요건 완화라고 볼 수 있다(「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제42조, 준용법「공무원연금법」제46조 제2항, 제48조).

2. 사학연금법 개정의 영향

가. 소득공백기의 발생

사학연금제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도록 개정된 것은 이미 관련 연구에서도⁷ 나타난 것처럼 소득공백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제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1995년 도입된 것으로 연금수급을 위해 요구되는 재직기간을 충족시킬지라도 개시연령 도달 이전까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연금지급의 장기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제도적 장치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규정에 변화가 있었으며,⁸ 2015년 개정 사학연금법에서는 1996년 이전 임용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에 대해 임용시기의 구분 없이 단계적으로 65세에 연금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사학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자의 연금액은 낮아지고, 저소득자의 연금액은 높아지게 되었다.

6. 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연금(10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이나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7. 조찬희(2016.3.)

8. 1995년 도입 이래 2000년 및 2009년에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학연금 가입자 중 퇴직자는 일정 기간 연금소득이 없이 생활해야 하는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초·중등 교원은 62세, 전문대학 이상의 교원은 65세, 그리고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60세에 정년이 되기 때문이다.⁹ 물론 퇴직수당을 활용한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¹⁰ 향후 정년퇴직 연령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학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직면하지 않던 퇴직 후 소득의 일시적 단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2015년 퇴직자 연령분포는 교원의 경우 20대 중·후반과 50대 후반에서 65세까지의 구간에, 그리고 직원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과 60세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¹¹ 그러나 2014년까지 적용되던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공백기는 평균 은퇴연령인 60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조기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은 퇴직자에게¹² 소득공백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사학연금 재정재계산 추계를 활용하여 소득공백기 문제를 예상해 본 연구에서는¹³ 시간이 경과할수록 56~60세와 61~65세 구간에서 은퇴하는 퇴직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연령구간별 사학연금 퇴직자 비중 예상

(단위 : 세, %)

연령	2016년	2022년	2024년	2030년	2033년	2040년	2050년	2060년
30세 이하	41.9	39.0	39.1	39.5	39.1	38.0	36.4	35.3
30~35세	16.9	15.1	15.1	15.6	15.6	15.3	14.7	14.2
36~40세	7.7	7.2	7.2	7.4	7.4	7.3	7.1	6.8
41~45세	5.1	4.6	4.7	4.7	4.7	4.7	4.6	4.4
46~50세	4.0	3.9	3.8	3.9	3.9	3.9	3.9	3.8
51~55세	4.6	4.5	4.5	4.5	4.4	4.5	4.7	4.8
56~60세	9.6	9.5	9.1	10.1	10.1	10.8	11.5	12.3
61~64세	8.6	11.6	12.0	9.6	9.9	10.1	10.9	11.9
65세	1.6	4.5	4.6	4.7	4.9	5.5	6.2	6.4

*자료 : 조찬희(2016. 3), p.11.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

10. 이 경우에도 소득대체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11. 『2015년도 사학연금 통계연보』를 참고

12. 2015년 퇴직자의 경우 97.2%가 해당된다.

13. 조찬희(2016.3)

그리고 같은 연구에서 퇴직연금개시 연령, 평균 퇴직연령, 그리고 평균 재직년수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득공백기간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예상 소득공백기간

(단위 : 세, 년)

연도	퇴직연금 개시연령	퇴직연금 수급권자		평균 소득공백기간
		평균 퇴직연령	평균 재직년수	
2016	60	45	16.5	14.8
2017	60	46	16.7	14.4
2018	60	46	17.1	14.0
2019	60	47	17.4	13.5
2020	60	47	17.8	13.1
2021	60	47	18.1	12.8
2022	61	49	19.1	12.3
2024	62	50	20.1	11.6
2027	63	52	20.7	11.3
2030	64	55	25.2	8.8
2033	65	56	24.7	8.9

*자료 : 조찬희(2016. 3), p.10.

나. 소득대체율의 하락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소득대체율은 두 구간에 걸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받게 되는 수급기 동안의 소득대체율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소득공백기 동안의 소득대체율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2015년 사학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지급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퇴직 후 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은 부담률 인상으로 인한 퇴직 전 소득의 감소보다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급률의 단계적 인하에 따른 영향을 일률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지급률 인하 이전에 33년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62.7%에 이르던 최대 지급률이 2016년 시작하여 동일 기간인 33년을 재직하고 퇴직할 경우 55.64%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대체율이 개정 이전에 비해 88.7%에 그치게 되었다. 만일 앞에서 살펴본 소득공백기를 포함하여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계산해보면 더 악화될 것은 틀림없다.

다. 기타

사학연금법의 2015년 개정에서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내용들로, 첫째, 부담률의 인상이 퇴직 전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부담률이 기존의 7%에서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재직 시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기존의 1.8배에서 1.6배로 하향한 것, 연금액의 물가연동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것,¹⁴ 그리고 소득재분배 성격을 새롭게 반영한 것 등과 같은 개정 내용도 퇴직자의 연금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개정내용들은 수급자 사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나, 개별 수급자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낮아져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게 되었다.

한편 연금수급 재직기간을 기존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10~20년 미만 사이의 기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하는 가입자의 퇴직 후 소득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사학연금법 개정 영향에 대한 대응

2015년 개정된 사학연금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개별 가입자에게 퇴직 후 소득의 불안정과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소득공백기나 소득대체율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요청된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나 소득대체율의 악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퇴직 전후에 활용 가능한 재원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재직기간 중 소득, 퇴직 시 자산, 퇴직 시 퇴직수당, 그리고 재취업을 통한 소득창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 재직기간 중 소득의 활용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은 재직기간

14.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고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사회 일반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중의 소득을 활용하여 퇴직 후의 소득흐름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퇴직 후 생존기간이 점차 장기화되어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한 우려가 증가는 상황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접근 방안이다.

퇴직 후 5년 동안의 소득공백기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재직기간 중의 소득으로 5년 확정기간의 연금상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신연금상품을 이용하여 연금수급기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소득흐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개정에서는 사학연금의 부담률이 점차 높아지도록 되어 있어서 재직 시 소득의 추가적인 활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퇴직 시 자산의 활용

퇴직 후 소득공백기나 연금수급기의 소득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시 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내용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평균연령 62세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보유주택 평균 시가는 약 6억 2천만 원, 금융자산은 약 1억 8천만 원, 그리고 부채는 약 7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순자산은 약 7억 3천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⁵

그러므로 주거를 제외하고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1억 1천만 원에서 은퇴 후 목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비용을 자녀결혼자금으로 한정하여 평균 결혼비용 지출 3천 8백만 원을 차감하면 은퇴용 자산으로 약 7천 2백만 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으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하여 퇴직 후 5년 기간 동안의 소득공백기에 활용할 경우 매월 약 127만 원을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매월 약 3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금액은 각각 평균재직기간이 30.56년인 사학연금 수급권확보 재직자 평균기준소득

15. 조찬희(2016.3., p.11)에서는 공무원과 사학연금 가입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유사하며, 교육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2014년 말)도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유사하다고 보아 공무원연금 가입자 대상 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승렬(2010, pp.57-58)을 참조

16. 이 금액들은 이자율을 2.25%로 가정하여 구했으며, 특히 종신연금의 경우는 60세 남자가 기시급 연금을 활용할 경우의 금액으로, 제8회 경험사망률을 통해서 계산한 금액이다.

월액(2014년 말 기준 약 6백 49만 원)의 19.6% 및 5.1%에 그치게 되어 소득공백기의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연금수급기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 시 자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흐름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대응하거나 퇴직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 퇴직수당의 활용

사학연금 퇴직자가 받게 되는 퇴직수당을 연금화하여 소득공백기 및 연금수급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퇴직 시 자산을 활용하여 연금화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사학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월액, 재직기간, 그리고 재직기간별 지급률의¹⁷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앞서와 같이 평균 재직기간 및 해당 재직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통해 구해보면 약 7천 5백만 원의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이 규모의 퇴직수당으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하여 약 5년의 소득공백기에 활용할 경우 매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할 경우 매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¹⁸

이 연금액은 앞의 퇴직 시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평균재직기간 및 사학연금 수급권자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해 각각 20% 및 5.4%에 그치게 되어 역시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 후 소득공백기 동안 또는 연금수급기 동안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퇴직수당을 활용하더라도 낮은 소득대체율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퇴직 시 자산과 퇴직수당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두 소득대체율의 단순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므로 각각 약 40% 및 10.5%가 되어, 소득공백기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소득대체율을 보이게 된다.¹⁹

17. 사학연금제도 퇴직수당의 재직기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중전기간	10.0	35.0	45.0	50.0	60.0
이후기간	6.5	22.75	29.25	32.5	39.0

18. 앞의 퇴직 시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가정으로 구한 금액이다.

19. 그리고 퇴직 후 연금수급기 동안의 소득대체율은 사학연금의 소득대체율 62.7%에 10.5%가 더해져 70%를 상회하는 소득대체율을 보이게 된다.

라. 재취업 소득의 활용

끝으로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한 소득창출로 소득대체율을 확충하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6%에 그치고 있어²⁰ 재취업을 통한 소득공백기의 대응은 충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낮은 고용현황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임금은 6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²¹ 퇴직 후 소득공백기나 연금수급기의 경제적 안정의 문제는 재취업을 통해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 시사점

2015년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에게는 소득공백기의 문제 및 소득대체율의 하락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문제를 개정 이후의 사학연금제도 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 소득을 활용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퇴직시 자산 및 퇴직수당을 활용하여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재취업을 통한 소득창출 경우 등을 살펴보았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을 활용할 경우 소득대체율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직 후 소득의 단절이나 낮은 소득대체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의 활용 가능성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령사회에 직면하여 다양한 공사연계 연금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통해 여러 계층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직 시 소득을 포함하여 퇴직 시 자산이나 퇴직수당과 같은 일시금 성격의 자금을 미래의 현금흐름으로 전환하여 퇴직 후 소득공백기나 연금수급기의 낮은 소득대체율에 대처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적연금제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 통계청(2016), 「2015년 고령자통계」

21. 통계청(2014), 「노인실태조사」

제3장 사적연금제도 활용을 통한 경제적 안정의 모색

1. 사적연금제도의 공적연금 보완

사학연금은 저부담 및 고급여 중심의 제도 설계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5년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다시금 개정되었다.²²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공적연금의 위기 현상은 마찬가지로 OECD 국가 대부분이 공적연금을 개혁하거나 사적연금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²³ 즉,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제도 도입,²⁴ 중위소득계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사적연금 가입이 임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미국에서는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을 통해 가입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사적연금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지급 방식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을 도입하여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사적연금의 보장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9개국²⁵, 멕시코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⁶

그리고 공적연금의 사적연금과의 연계강화는 스웨덴, 폴란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공적연금 틀을 유지하면서 공적연금의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식도 있다. 스웨덴의

22.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 인하 등의 2015년 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2046년 기금고갈이 예상된다.

23. OECD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급개시연령의 연장과 연금급여 자동조정장치 등을 도입 및 추진하여 왔으며, 보다 최근에는 노인근로의 장려와 사적연금의 장려 등을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OECD(2012), p.11.

24. 영국의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 제도, 독일의 노인 및 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 스웨덴 및 칠레의 최저보증연금제도 등이 좋은 예이다; 강성호(2013), p.11.

25.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26. 사적연금의 가입 의무화는 구체적으로 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단체협약을 통한 의무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OECD(2009)를 참조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의 공적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사적연금인 적립식 DC형 개인연금의 수익연금기금(Premium Pension Fund)으로 강제 전환하는 부분 민영화를 이행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최근의 정책흐름은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세제개편이나 보조금지급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즉,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위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지급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제도 뒷받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학연금 가입자만을 위해 도입 및 활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의 공적연금 보완 관련 제도 중 사학연금 가입자가 직면하고 있는 퇴직 후 소득공백기 및 연금수급기의 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사적연금제도를 통한 보완의 유형

가. 재직기간 중 소득과 사적연금제도의 활용

재직기간 중 소득을 추가로 활용하여 퇴직 후 소득공백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퇴직 후 연금소득을 높여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경우 활용 가능한 사례로는 미국 또는 호주의 추가납부제도(Catch-up plan[미국], Catch-up payments[호주]), 독일의 리스터연금이나 일본의 장수안심연금의 활용을 들 수 있다.

1) 추가납부제도

추가납부제도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연금자산의 추가적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추가납부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부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미국의 추가납부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50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Age 50+ Catch-up)와 퇴직 시점의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Special 457 Catch-up)로 나누어져 있다.²⁷ 50세 이상과 퇴직 시점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50세 이상의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추가납부 한도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차등화되어 있다. 한편 추가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호주의 추가납부제도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pension) 가입자를 구분하여 추가납부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²⁸ 추가납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일정규모 이하이어야 하며,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한도를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는 금액만큼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추가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가납부제도는 재직기간 중 소득이나 퇴직 시점의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확충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은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리스터연금 및 장수안심연금

독일에서는 민영 사적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부담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주는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²⁹ 즉, 리스터연금을 이용할 경우 가입자 본인과 자녀에게 정해진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보조금만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부담 최소기여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최소기여율 및 연간 한도를 설정하여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사적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보조금을 통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부족한 연금을 보완해주는 목적의 리스터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이나 공적연금 지급시에 종신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결국 리스터연금제도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보조금지원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사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27. http://www.nrsforu.com/iApp/tcm/nrsforu/learning/library/catch-up_contributions.jsp

28. 강성호(2016.9.12.), p.10.

29. 강성호 · 류건식(2016.8.1.); 민영보험회사가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적연금이 정부의 상품설계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인증을 통해 리스터연금제도에 편입되는 방식으로, 리스터연금은 단일의 연금상품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자동가입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퇴직연금의 준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사적연금의 가입의무화 내지는 강제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전환하여 고령화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독일과 유사한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장수안심연금은 연금소득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³⁰ 보완하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이내에서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보다 확대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제도나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통한 공적연금 보완정책의 핵심은 사적연금을 활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데 따른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나. 퇴직 시 소득과 사적연금제도의 활용

퇴직 시의 퇴직수당, 그리고 더 나아가 퇴직 후의 연금소득을 활용 또는 조정하여 퇴직 후의 소득공백기나 연금소득을 보완함으로써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경우 활용 가능한 사례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및 고령거치연금 등의 구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추가납부나 리스터연금 및 장수안심연금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퇴직 후 연금수급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을 활용하거나 사적연금을 이용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이다.³¹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여

30. 이상우(2016.5.2.); 일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14년 62.7%에서 2058년 42.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 조기에 소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보완한 것이다.

받게 되는 퇴직적립금을 자동으로 이전하여 노후의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제도 사이의 연계성 또는 이관성(por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³²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부담금을 통해 한 층 두터워진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미성년자 등으로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나, 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에게도 가입을 허용하여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저소득 공무원이나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나아가 중도인출이나 일시금선택의 허용 등으로 인해 노후의 연금소득으로 경제적 안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게 되며, 세제혜택에도 한계가 있어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의 유용성은 완전하지 못한 형편이다.

2)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은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과 같은 일시금을 이용하여 가입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서부터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연금보험상품이다. 그리고 연금의 지급은 종신행, 상속형, 확정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확정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제외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제혜택이 있다.

따라서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은 퇴직연령과 연금개시연령 사이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 가교연금(bridge annuity)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³³ 그리고 연금지급액의 수준을 소득공백기와 그 이후의 연금수급기 등 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지급방식을 통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3) 고령거치연금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고연령거치연금(advanced life deferred annuity)의 지급방식을 활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보완 및 보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³⁴ 즉, 고령거치연금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일부를 거치기간에 인출하여 활용하되, 나머지는 거치종신연금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자금이 소진되는 경우를 방지하게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32. 류건식·김대환(2012.8.6.), p.3.

33. 이경희(2015), p.8.

34. 류건식(2014.6.16.), p.14.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정 기간 연기하여 고령기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수당 등의 일시금을 일부는 소득공백기 동안 인출하여 활용하고, 나머지는 연금수급기의 소득대체율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학연금 지급방식을 보다 다양하게 설계한 후 사학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경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보다 정교하게 지원할 수도 있다. 즉, TIAA-CREF³⁵에서처럼 연금소득흐름의 특성을 퇴직 후 요구되는 소득흐름에 맞추어 설계 및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대체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고령거치연금의 형태는 연금의 상호보조(cross-subsidy) 성격과 함께 투자를 통한 적립금 총규모의 증가로 노후의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표5〉 TIAA-CREF의 연금지급방식

구 분		주요 특징
전통형 연금방식	단생연금 (Single Life Annuity)	일반적인 연금지급방식이며, 먼저 사망한 가입자의 잔여 적립금재원을 활용하여 연금지급이 결정됨
	연생연금 (Joint Life Annuity)	배우자의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으로 활용되면서 가장 일반적인 지급방식으로 활용됨
전통형 이외의 연금방식	이자지급방식 (Interest Payment Retirement Option)	적립금의 투자수익만 인출하다가 원금은 연금전환 시점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됨
	최저인출방식 (Minimum Distribution Option)	적립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기대여명의 역수로 결정됨(짧은 기대여명일수록 높은 인출비율 적용)
	프로그램인출방식 (Systematic Withdrawal and Transfer)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인출산식으로 적립금의 소진 때까지 정기적인 인출이 이루어짐
	일시금방식 (Lump-Sum)	적립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함

자료: Ameriks(2002)에서 작성

35.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 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

3. 사적연금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

가. 사적연금제도의 활용 가능성

앞에서 노령사회의 노후소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각 국가가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적연금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기 및 소득대체율의 대응 가능성 관점에서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 차원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지급을 통해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제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쉽게 제도가 성립되거나 시행되기 어렵다는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지급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는 추가납부제도와 리스터연금 및 장수안심연금은 국가 차원에서 적용의 범위나 세제혜택 또는 보조금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는 성격의 공사연계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기 전에는 사학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A)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정상 근속기간이 짧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퇴직하는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이며, 활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하겠다.³⁶ 그러므로 기왕의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이 없더라도 퇴직 후 민영 사적연금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나 고령거치연금 등과 같은 민영 사적연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므로 제약이 없는 대안이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은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의 소득흐름으로 이연하는데 따른 거부감(annuity aversion)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³⁷

36. 그러나 여기에서는 퇴직 이후의 노후소득을 중심으로 경제적 안정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개인형 퇴직연금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37. 사람들이 자산을 연금화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이 발생한다(비싸다)'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고 있다; Mitchell and Drinkwater(2006), p.9.

- ①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 ② 유동성을 상실하게 된다(liquidity risk).
- ③ 유산으로 상속하기가 어렵다(bequest motive).
- ④ 고정액 연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취약하다(inflation risk).

〈표6〉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관련 제도의 특징과 활용 가능성

연금관련 제도	주요 특징	활용 가능성
추가납부제도	세제혜택	- 현행 사학연금제도 내에서는 활용 불가, 세제혜택도 불가 - 사적연금의 자발적인 추가 활용 측면에서는 가능
리스터연금, 장수안심연금	보조금지급	- 우리나라의 현행 제 연금제도 내에서는 활용 불가
개인형 퇴직연금 (IRA)	퇴직급여제도 사이의 연계성 또는 이관성	- 현재 퇴직연금제도에서 시행 중 -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 퇴직하는 사학연금 조기연금수령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일시납 즉시연금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	- 퇴직수당으로 민영 사적연금 활용을 통해 가능
고령거치연금	장기의 경제적 안정 도모	- 퇴직수당으로 민영 사적연금 활용을 통해 가능 - 사학연금의 지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활용 가능

나. 사적연금제도 활용의 한계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사학연금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외에도 사학연금공단이 연금관련 상품들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퇴직수당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상품을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수당을 연금화하여 지급하는 것을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인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저촉될 것이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퇴직수당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제도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³⁸

⑤ 더 좋은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한다(opportunity risk).

⑥ 보험회사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소득흐름이 일정 부분 상실된다(fiduciary risk).

⑦ 사회보장이나 퇴직연금 등 다른 소득보장이 충분하다.

⑧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알기 때문에 불필요하다(longevity risk).

⑨ 예상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 적립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mortality risk).

38. 지난 2012년 사학연금공단의 퇴직연금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조찬희(2016.3.), p.37.

한편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현행 퇴직수당제도를 개선하여 현금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퇴직연금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현금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민영 퇴직연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수당을 현금자산으로 위탁받아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연금법 및 동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학연금법 및 동 시행령 관련 조항에 현금자산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³⁹

〈표7〉 퇴직수당 연금화에 따른 법적 사항 비교

연금화 방식	법적 요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연금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현행 제도를 개선한 연금지급	사학연금법에 현금자산 위탁 관련 내용 명시

4. 시사점

2015년 사학연금법의 개정에서 비롯된 소득공백기의 발생 및 소득대체율의 하락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개정 이후의 사학연금제도 틀 안에서 퇴직연금사업자로서, 또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연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개정이나 보완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제약이 없는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즉, 사학연금공단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화를 포함하여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39.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공무원연금법 제87조 제2항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
-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항 ‘법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3.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 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포함하여 자신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투자관련 상품 및 연금상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연금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낮을 경우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 계층의 경우 스스로 투자형 상품이나 사적연금 등을 활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를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퇴직 후 소득안정을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4장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안정의 지원

1.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개념

가.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의미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노후의 소비 등 다양한 재무적 필요에 따라 복합적 재무계획을 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별 특성을 반영한 자산관리계획을 설계하고,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개별 고객의 자산관리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제 업무를 실행해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다.⁴⁰

금융소비자는 미래에 원하는 생활 및 지출 수준, 현재 조달 가능한 소득 수준, 저축한 재무자산의 기대수익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한 재무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결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미래의 소득흐름을 계산해낸다고, 독자적으로 금융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한 후 그 결과까지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금융전문기관이 관련 내용을 서비스형태로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을 망라한 종합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투자자문 및 운용뿐만 아니라 자산을 다음 세대로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상속설계 등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면 사학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그럼으로써 퇴직 후 소득공백기나 낮은 소득대체율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염려해야 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믿을 수 있는 질 높은

40. 자산관리서비스의 개념을 고령화에 대응시킨 것으로, 자산관리서비스는 미래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출계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미 축적되어 있는 재무자원을 어떻게 보존, 증식 혹은 활용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익(2009)을 참조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⁴¹

나.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특징

노후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고객의 예상되는 노후 상황에 맞추어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개별성, 복합성, 맞춤형 등을 특징으로 이루어진다.⁴²

개별성이란 형식적인 측면에서 고객계좌의 개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에서는 개별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운용이 관리 및 통제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복합성이란 고객이 요구하는 자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투자계획, 위험관리, 은퇴계획, 상속계획, 절세계획, 부동산계획,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 제공된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고객의 필요 및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비스의 종류를 불문하고 하나로 묶어 제공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맞춤형은 표준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점에 고객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후에도 고객이 원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학연금공단이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성, 복합성, 그리고 맞춤형의 특징을 충족하는 전문 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소비수준이 퇴직 이후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41. 주소연(2008) 및 Clark, d'Ambrosio, McDermed와 Sawant(2006)은 자산관리서비스가 개인의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국재무설계(<http://www.koreafp.co.kr>)에서도 같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행동이 변화되고, 그 결과 미래를 위한 대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42. 정원석 · 김미화(2015.5.), pp.20~22.

2.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현황⁴³

가. 국내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 현황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및 미래의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재무설계의 각 영역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무적 필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금융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 두고 있다. 즉, 각 재무설계의 영역에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어떠한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실질적인 역할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8〉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재무설계서비스 홈페이지



구 분	주요 내용
내연금알아보기	로그인서비스(예상연금조회, 납부내역조회, 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모의계산)
국민연금알아보기	로그인서비스
종합재무설계	로그인서비스
노후준비자금설계	국민연금설계, 퇴직연금설계, 개인연금설계, 통합설계결과
간단재무설계	노후자금계산
목적자금설계	결혼자금마련, 교육자금마련, 주택자금마련, 창업자금마련
재무계산기	화폐시간가치, 예치금계산, 대출할부금, 퇴직금계산
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한편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권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는 중산층의 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재무적 필요와 관련된 서비스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증권의 경우 CMA와 Wrap Account를 통해 단순히 투자수익의 최대화에만 초점을

43. 이 부분은 정원석·김미화(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맞춤 서비스를 중산층에게 제공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도 설계사들이 보험위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중산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증권이나 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상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통한 서비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⁴⁵

반면에 은행은 증권이나 보험분야와 달리 은퇴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득흐름과 미래의 희망소득을 분석하여 현재 필요한 저축수준과 노후대비를 위해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을 제시하여 자산관리서비스로서 필요한 개별성과 복합성,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위주의 프라이빗뱅킹(Private Banking; PB)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⁴⁶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애기간 또는 퇴직 후 기간에 대한 포괄적인 자산관리, 즉,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정립되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외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사례

해외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중산층보다는 주로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학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형태나 내용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MLP의 경우 중산층을 대상으로 창업부터 결혼, 육아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영국의 IFA는 주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투자상품과 연금상품을 포괄하는 자문수수료 기반의 자산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독일의 MLP

독일의 대표적인 독립자문회사(Independent Consulting Company)인 MLP사는 1971년 보험자문서비스제공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중개회사로 부유층은 MLP가, 고액자산가는 자회사인 Feri AG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⁴⁷

44. CMA는 2014년 9월 현재 약 1,085만 계좌에 38조 5천억 원, 일임형 Wrap Account는 약 70조원의 수신고를 보이고 있다.

45. 보험분야에서는 특히 아직 정형화된 서비스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역량이 서로 다른 설계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품질에 큰 차이가 있으며, 추천 상품도 일사전속주의 원칙으로 인해 특정회사에 한정되고 있다.

46. 1998년 하나은행이 시작, 2010년 기준으로 14개 은행이 P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7. 2015년 기준 858,700여 명의 개인고객이 있으며 1,935명의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다.(MLP Annual Report 2015)

MLP는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자녀교육, 노후대비 등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장기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며, 전 생애기간에 걸친 유동성관리 및 자산투자에 대한 자세한 조언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형성시기에는 연금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영국의 IFA

영국의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는 자문수수료 기반의 독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내 생명보험 및 연금시장의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한 명의 금융투자상품 재무설계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들의 연합체(IFA Networks)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⁴⁸

IFA는 고객의 재무상태, 선호, 목표에 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고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금융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언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또 IFA는 상품제공자와 전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주로 투자형 및 연금 상품의 판매, 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은퇴설계, 상속상담, 보험 및 연금 등 금융상품 중개업무와 함께 세제 및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자문보수의 경우 종전까지는 상품판매수수료(commission) 수취가 가능하였으나, 2012년 말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⁴⁹ 시행 이후에는 투자형 상품 및 연금상품 판매시 자문보수 수취가 가능해졌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근거하여 자문보수체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서비스제공 이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변경되었다.

48. 영국의 자문업자 유형은 IFA 외에도 Whole-of-market Advisor, Single-tied Advisor, Multi-tied Advisor로 구성되며, 2013년 기준으로 22,790명이다;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ers(2014).

구 분	내 용
IFA	- 상품제공자와 전속관계를 갖지 않은 독립자문업자 - 전체 금융시장의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투자자에게 자문보수(fee option)를 요구할 수 있음
Single-tied Advisor (1사 전속)	- 특정 금융회사 또는 상품제공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제공
Multi-tied Advisor (복수 전속)	- 제한된 범위의 금융회사 또는 상품제공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Whole-of-market Advisor	- 특정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전체 금융시장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며 자문서비스를 제공(IFA와 동일) - 투자자에게 자문보수를 요구하지 않음

49. RDR(Retail Distribution Review;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은 2012년 말부터 소매투자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투자형 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에만 적용 및 시행된 것으로 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자문체계의 명확화, 자문비용청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도입

가.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운영 환경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는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고금리보장이나 수수료 인하 등 운용성과를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서비스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퇴직연금 서비스대상의 확대, 퇴직연금 서비스 관련 규정의 강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서비스 중심으로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야함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새로운 경쟁상황을 조성하게 되었다.

〈표9〉 퇴직연금시장 경쟁력 요인의 변화

구 분	경쟁 1단계	경쟁 2단계	경쟁 3단계
경쟁 양상	수탁기관 간 경쟁	동류기관 간 경쟁	개별고객 경쟁
경쟁력 요인	단기 수익률 및 수수료		서비스 능력 등
시기	제도 도입 단계 (2005년~ 2012년)		제도 성숙 단계 (2012년 ~)

자료 : 류건식(2013.1.14), p.10.

개인의 종합적인 노후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난 또 다른 변화의 하나는 연금관련기관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4월부터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연금수급개시 시기,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⁵⁰ 2016년 5월 13일부터는 사학연금도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⁵¹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은 2016년 4월말 현재 약 10만 명이 가입하여 누적 조회수가 약 66만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포털가입자와 연금정보제공기관(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사학연금공단) 사이에서 정보의 흐름을 중개하고 있다.⁵² 즉,

5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4.1.)

5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5.13.)

52.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도 개인의 재무상황에 적절하도록 맞춤형 지급방식을 개발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과 함께 적립금 및 예상연금액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중심의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연금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금융분야에서는 은퇴설계서비스 및 투자자문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체계가 구축·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⁵³

따라서 사학연금공단도 차별화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되는 자산관리서비스와 함께 독일 MPL이나 영국 IFA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참고하여 연금상품을 비롯하여 투자형 상품에 대한 정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이 장기적으로 폭넓게 접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학연금 가입자 개인의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회적인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공적·사적 연금관련제도 및 환경에 변화가 나타날 경우 자신의 연금정보를 재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여건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경우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 증대 현상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학연금 가입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기회와 이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금융관련 기관과의 경쟁이나 경험부재라는 측면은 위협과 약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최근 사학연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노후소득 등 노후보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다는 점은 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수요의 형성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쳐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에서 제공되어 온 은퇴설계서비스나 증권에서 ELS나 Wrap Account를 통해 이루어진 자산관리서비스는 자산가 내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수익창출 중심의(PB 성격의) 서비스였으며, 보험에서 설계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 자산관리서비스도 위험관리 또는 보험상품 중심의 재무설계 서비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53. 추정연금액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개인연금 외에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주택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상품과 함께 투자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초기의 단계이거나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잠재적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연금관련기관이나 금융관련기관에서 은퇴관련 서비스나 재무설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를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것은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업 등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경쟁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큰 위협요소라고 하겠다. 나아가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경우 기존의 인프라와 금융의 모든 분야를 활용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학연금공단은 현재까지 생애자산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관련 서비스는 연금사업의 기본적인 내용과 제휴서비스에 그치고 있어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제휴복지(금융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관리상담은 단순히 제휴기관과의 연결통로에 그치고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나 내용이 축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공단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입자가 잠재시장으로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제도적 변경으로 인해 노후소득 등 노후보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있으므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이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비용이나 노력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사학연금공단은 가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연금정보 및 재무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인 개별성을 수월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표10〉 사학연금공단의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관련 서비스의 내용

구분		내용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재직초기 (5년 미만)	- 신규가입안내 - 신규임용자 사학연금 가이드 책자 제공 - 대여제도 안내 - 재해보상제도 안내 - 소급(군복무) 신청
	재직중기 (5년~9년)	- 합산제도 안내 - 금융기관 협약대출(생활자금대여제도) 안내 - 국고학자금대여 안내 -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재해보상제도 안내
	재직장기 (10년 이상)	- 퇴직급여수령준비 안내 - 금융기관 협약대출(생활자금대여제도) 안내 - 국고학자금대여 안내 - 재해보상제도 안내
	연금수급	- 연금수급 안내 - 유족급여 안내 - 연금액조정 안내 - 연금수급자 대여제도 안내 - 연금소득 과세제도 안내 - 해외송금서비스 안내 - 연금일부정지제도 안내
제휴복지 (금융서비스)	자산관리상담	- 미래에셋, 하나대투증권 - 국민은행, 하나은행
	제휴카드	- 농협카드, 하나카드

자료: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tp.or.kr>)에서 작성

4. 생애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의 조건

생애자산관리서비스 영역을 다루고자 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필요를 감안하여 여러 대안들을 살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즉, 신뢰와 자질을 바탕으로 개별성, 복잡성, 그리고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체계적인 형태와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의 각종 금융정보를 필요할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고객의 자발적인 정보제공이나 동의를 통한 정보열람으로 얻을 수 있는 고객의 개인재무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이루어지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부정확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접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질과 관련해서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연금상품이나 투자상품의 판매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신탁, 퇴직연금, 수익증권, 변액보험 등과 같은 금융상품은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나 AFPK, CFP 등과 같은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역량이나 자격증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취 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 수취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만일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를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또는 판매보수; commission) 형태로 수취하게 된다면, 수수료 수입이 많은 금융상품을 권하게 될 유인이 커지게 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⁵⁴

끝으로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비재무영역의 서비스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한 고객은 비재무 영역의 서비스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제공할 경우 차별화된 서비스로서 한 층 높은 만족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재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이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4. 물론 현재와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자문에 대한 서비스제공 수수료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판매수수료는 줄어나가고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법규로 인해 세무,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한 자문수수료 역시 수취가 곤란한 것도 제약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 제약이 해결될 경우 자문수수료 기반(fee base)의 생애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사학연금법의 2015년 개정은 연금재정의 고갈을 우려하여 연금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담은 상향 조정하고 급부는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다. 그러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부담률 인상 및 연금지급률의 인하, 그리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한 개정은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악화시키게 되었다. 즉, 2015년의 개정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공백기의 발생과 함께 전반적인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연금소득 상황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되며, 이는 사학연금을 주관하는 사학연금공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특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가입자가 활용 가능한 재원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이며, 재직 시 소득을 미래의 소득흐름으로 전환하여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재직 시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새롭게 사적연금을 구입하여 미래의 소득흐름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미국 또는 호주의 추가납부제도나 독일의 리스터연금 및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예처럼 국가의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지급과 같은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또 퇴직 시점에서 형성된 자산이나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수당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이나 고령거치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이용하여 퇴직 후 소득공백기 동안, 나아가 연금수급기 동안 소득의 흐름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적연금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사학연금공단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를 위하여 사적연금을 취급 및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행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어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사적연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반면, 현금자산의 수탁·관리를 통해 제공할 경우에는 사학연금법 관련 조항의 신설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퇴직 후 생활에 요구되는 소득흐름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IAA-CREF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자지급방식, 최저인출방식, 프로그램인출방식 등과 같은 유형을 도입하여 제공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자산관리 및 재무계획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은 사학연금법 관련 조항의 재해석 및 신설을 통해 현재 사학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공단의 기본 역할인 사학연금업무에서 더 나아가 가입자의 퇴직 후 소득공백기 및 소득대체율 하락 문제에 대응하는데 유용한 사적연금을 다루는 것과 함께 외부의 투자상품 및 연금상품까지 포함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의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초래하게 된 퇴직 후 소득공백기와 퇴직 후 소득대체율의 악화 등과 관련하여 사학연금 가입자 또는 사학연금공단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공백기를 극복하고 소득대체율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으며, 사학연금공단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안정을 더 장기적 및 포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안이나 서비스가 사학연금공단에 의해 추진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 방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공사연금의 연계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학연금공단이 생애자산관리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보다 자세한 분석은 후속의 연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3.6.3.), 「해의 공·사적연금 비중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36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2016.9.12.), 「퇴직연금 추가납부제도의 도입 필요성」, KiRi Weekly 제401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2016.8.1.),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 KiRi Weekly 제395호, 보험연구원.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4.1.),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5.13.), “5월 13일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사학연금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김세중·김유미(2016.5.23.), 「통합연금포털의 현황과 평가」, KiRi Weekly 제385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2013.1.14.), 「퇴직연금서비스중심의 환경변화와 과제」, KiRi Weekly 제216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2016.6.16.), 「사적연금의 연금화 필요성과 과제」, KiRi Weekly 제287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2016.9.1.),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한계와 개선방안」,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1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2011, 여름),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계간보험동향 제58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대환(2012.8.6.),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방향」, KiRi Weekly 제194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김동겸(2015, 여름),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계간보험동향 제74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창우·김동겸(2009.3),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 마승렬(2010.12), 「퇴직공무원의 자산 수탁관리 서비스 제공방안 연구」, 공무원연금공단 GEPS연구소.
- 서병호·김우진(2012), 「국내은행의 PB 비즈니스 발전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송홍선(2010),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발전과제」, 자본시장연구원.
- 신문식·이경희(2004),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보험연구원.

- 이경희(2015.5.31.), 「일시납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완 필요성」, KiRi Weekly 제83호, 보험연구원.
- 이경희·이경아(2011, 겨울), 「노후소득 창출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옵션 정책과 시사점: TIAA-CREF 전략을 중심으로」, 계간보험동향 제60호, 보험연구원.
- 이상우(2016.5.2.), 「일본판 리스터연금(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 KiRi Weekly 제382호, 보험연구원.
- 정원석·김미화(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산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조찬희(2016.3.),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 전 소득공백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연금제도연구소
- 주소연(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pp.73-91.
- 진익(2009),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 진익(2010), 「신성장동력 창출과 자산관리 서비스 사업모형」, 보험연구원, 보험경영인 조찬희 발표자료.
- 진익·김동겸(2010), 「보험회사 자산관리 서비스 사업모형검토」, 보험연구원.
- 통계청(2009a), 『2009 고령자통계』
- 통계청(2009b),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2010), 『사회조사보고서』
- 한국재무설계, <http://www.koreafp.co.kr>

- Ameriks, J. and Yakoboski, P.(Fourth Quarter 2003), “Reducing Retirement Income Risk: The Role of Annuitization”, Benefit Quarterly.
- Ameriks, J.(2002), “Recent Trends in the Selection of Retirement Income Streams among TIAA-CREF Participants”, Research Dialogue, TIAA-CREF Institute.
- Ameriks, J., Veres R., and Warshawsky, M.(December 2001), “Making Retirement Income Last a Lifetime”,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Vol.14, No.12.
- Antolin, P., Pugh, C., and Stewart F.(September 2008), “Forms of Benefit Payment at Retirement”, OECD Working Paper on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26.
- AON Hewitt(2011.9.1),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활용.
- Aviva(2011), Aviva Report: The Value of Financial Advice.

- Brown, J.(2008), “Financial Education and Annuities”, OECD Journal: General Papers, Vol.2008/3.
- Büttler M. and Teppa, F.(2007),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0.
- Clark, R. L., d’Ambrosio, M. B. McDermed, A. A. & Sawant, K.S.(2006), “Retirement plans and saving decisions: the role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5(1), pp.45~67.
- Lusardi, Annamaria(2000), “Saving for retirement: the importance of planning”, Research Dialogue, No.66, New York: TIAA-CREF Institute.
- Mitchell, J. and Drinkwater, M.(2006), “Behavioral Economics and Annuitization”, LIMRA International.
- MLP(2015), Annual Report.
- OECD(2009), “Pensions at Glance: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 Series.
- OECD(2012), “Pensions Outlook”, OECD Private Pension Series.
- The Association of Professional Financial Advisers(<http://www.apfa.net/>)
- TIAA-CREF(2010.4.30), Re: Request for Information Regarding for Lifetime Income Options for Participants and Beneficiaries in Retirement Plan.
- TIAA-CREF(2011), “TIAA-CREF Retirement Strategies-Helping You Reach Your Retirement Saving Goals”, TIAA-CREF financial series.

-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http://www.fpsbkorea.org/>).
- SAGA(<http://www.saga.co.uk/>).
- TIAA-CREF, Company History(http://tiaa-cref.org/about/press/about_us/history.html).
- TIAA-CREF, Quarterly Retirement Portfolio Statement
- TIAA-CREF(http://tiaa-cref.org/public/about/news/gen0906_178.html)